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48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2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부동산의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2493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E은 C에 대한 위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5. 7. 23. 위 채권양도를 C에게 통지하였다.

나. C의 부친 망 F이 2022. 12. 15. 사망한 후 피고와 C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2. 11. 25.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23. 5.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C과 나머지 상속인들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15 지분을 피고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C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고, 1994. 12. 17.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6. 12. 16.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약 28년간 망인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왔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을 내조하며 망인과의 자녀 6명을 양육하였다.
- ② 망인 사망 이후 C을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기간 거주해온 집이므로 이 집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C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6년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다. 즉,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부모의 거주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1492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 일단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위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과 피고가 장기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여 온 거주지이고, 피고가 현재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이 분양받고 그 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피고는 망인을 내조하고 가사노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는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대가 없이 포기하고 위 각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관한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별지